

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
기준등급표(제18조제1항 관련)

시험의 종류		기준등급		
		5급	7급	9급
한국사능력 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	3급 이상	4급 이상

비고

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직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,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. 이 경우 증명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